



# 2017학년도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

2017학년도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3. 4.

##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장 엄기성

### 1. 지원 자격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적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·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

### 2. 모집 정원: 99명 이내(우선 선발 인원 25% 이내 포함)

가. 정원 내 : 90명

나. 정원 외 :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각 호의 자 9명 이내

### 3.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

전형 유형	내용	선발 인원 (우선 선발 인원 포함)
정원 내	서류 평가,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, 과학 창의성 캠프,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, 자기주도적 학습능력, 학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,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	90명
정원 외	정원 내 전형과 동일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)은 (별첨 1) 참조	9명 이내 (모집 정원의 10% 이내)

※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복 접수 불가

### 4. 응시 원서 접수

<p>가. 원서 접수 : 인터넷으로만 접수</p> <p>1)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주소 : <a href="http://www.jinhakapply.com">www.jinhakapply.com</a>(진학사)</p> <p>2) 인터넷 추천서 입력 사이트 주소 : <a href="http://www.jinhakapply.com">www.jinhakapply.com</a>(진학사), <a href="http://www.ts.hs.kr">www.ts.hs.kr</a>(본교 홈페이지)</p> <p>3) 접수 기간</p> <p>가) 학생 지원서 : 2016.04.05.(화) 09:00 ~ 04.11.(월) 17:00</p> <p>나) 교사 추천서 : 2016.04.05.(화) 09:00 ~ 04.12.(화) 17:00</p> <p>4) 원서 접수 사이트 임시 오픈일 : 2016.03.30.(수) 15:00</p> <p>나. 서류 제출 : 반드시 우편으로만 제출 (※ 방문접수 불가)</p> <p>1) 주소 : 우)42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4(황금2동 613번지) 입학관리부</p> <p>2) 전화번호 : 053) 231-7540~3</p> <p>3) 기한 : 2016.04.12.(화) 소인까지 유효함</p>
--

1) [별첨 1]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

## 5.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

제출 서류	제출 방법	유의 사항
응시원서(1부)	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을 우편 제출	- 인터넷 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학교장의 직인을 득한 후 제출함. -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(저장형태 : *.jpg)을 업로드하며, 수정된 사진은 사용 금지함.
자기소개서(1부)	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입력	- 별도의 우편 제출은 없음.
교사추천서(1부)		- 별도의 우편 제출은 없음. -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료를 결제한 후, 추천서 입력이 가능함.
학교생활기록부Ⅱ (1부)	출력물을 우편 제출	- 학교생활기록부Ⅱ는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함. - 소속 학교장의 ‘원본 대조필’ 날인 후 우편으로 제출함. -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Ⅱ를 모두 제출함. - 지원자가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Ⅱ를 모두 제출함. -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 증명서(없는 경우 성적 증명서)를 각각 1부씩 제출함.
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증빙서류 <sup>2)</sup>		- [별첨 2] 참조
<p><b>※ 유의 사항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모든 입상실적, 자격증, 영재원 수료 여부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, 교외 수상은 기록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.</li> <li>2. 위 제출 서류는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됨.(정원 외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)</li> <li>3. 모든 우편 제출 서류는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반환하지 않음.</li> <li>4.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.</li> <li>5. 제출 서류에 대한 기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.</li> </ol>		

2) [별첨 2]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증빙 서류

## 6. 전형 방법 및 일정

구분	1단계 전형	2단계 전형	3단계 전형
방법	서류 평가	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	과학 창의성 캠프
내용	제출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영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	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·과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재성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	수학·과학에 대한 잠재능력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일시	2016.04.26.(화) ~	2016.05.22.(일) 12:30 ~ 18:30	2016.07.09.(토) 09:30 ~07.10.(일) 18:30
장소	본교	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본교
선발 인원	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전원	180명 내외 (우선 선발 인원 포함)	정원 내 : 90명 / 정원 외 : 9명 이내 (우선 선발 인원 포함)
합격자 공고	2016.05.18.(수) 16:00 본교 홈페이지 공고	2016.06.21.(화) 16:00 본교 홈페이지 공고	2016.07.29.(금) 16:00 본교 홈페이지 공고

※ 정원 내 및 정원 외 전형은 동일하며,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7. 전형료

구분	정원 내 지원자	2단계 전형 대상자	3단계 전형 대상자
전형료	20,000원	추가 30,000원	추가 40,000원
<b>※ 유의 사항</b> 1. 인터넷 원서 접수시 1, 2단계 전형료는 통합 납부함. 2. 1단계 불합격자는 접수시 입력한 계좌로 2단계 전형료를 환불함. 3. 1단계 합격자(2단계 응시대상자) 중 2단계 응시포기자는 기한 내 응시포기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, 2단계 전형료를 환불함. 4. 2단계 합격자(3단계 응시대상자)는 3단계 전형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함.(※ 납부 방법 및 기간은 추후 공지) 5. 인터넷 원서 접수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 희망자가 별도 부담함. 6. 정원 외 지원자는 전형료 및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를 면제함.			

## 8. 기타 사항

- 가. 본교의 필요에 의해 전형 기간 중 별도의 추가 전형을 할 수 있음.
- 나. 전형에 불참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.
- 다. 제출된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라.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후보자 중에서 선발함.
- 마. 최종 합격자는 입학 전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출해야 하며, 학교생활기록부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바. 최종합격자 중에서 중학교 1·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허가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.(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②항,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,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)
- 사.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.

[별첨 1]

##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

[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]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권자
- 2)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거주하는 자  
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
- 3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4) 행정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
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
- 5) 그 밖의 사회·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  - (1)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3)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6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7)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(아동교육비) 수급권자
  - (8) 차상위 저소득층 : 법정 차상위 계층  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(차상위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 등)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)
  - (9) 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외국 국적인 자

[별첨 2]

##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증빙 서류

구분	제출 서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	- 주민등록등본 1부, 수급자 증명서 1부
「도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시·벽지에 거주하는 자	- 주민등록등본 :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 1부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	-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(선정통지서 등) 1부
행정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	- 주민등록등본 :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 1부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- 주민등록등본 1부 - 관할 보건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호대상자	- 주민등록등본 1부 - 통일부장관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
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	- 주민등록등본 1부, 저소득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
법정 차상위 계층	- 주민등록등본 1부,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
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외국 국적인 자	- 부모와 지원자의 여권 사본이나 증명서 1부
<p><b>※ 제출 서류 유의사항</b></p> <p>○ 주민등록등본 : 등본 상에 부,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함.(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, 결손가정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것)</p> <p>○ 차상위계층확인서 :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(차상위장 애수당, 차상위자활급여 등) 확인서를 제출함. -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.</p>	